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72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박수현 · 김기표 · 서삼석
이성윤 · 장종태 · 조계원
김승원 · 정태호 · 이개호
양부남 · 신정훈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회유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나, 하굿둑·방조제 운영과 토사·염분 변화, 오염원 부담 누적으로 하구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하구 생태의 회복을 통한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체계적

-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하구”, “하구관리구역”, “하구복원사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하구의 복원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하구 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하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 대상 하구별로 하구복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의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구의 자연적 순환체계의 회복과 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농업·어업·항만 등 기존 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구”란 현재 또는 과거에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조석(潮汐), 염분(鹽分), 파랑(波浪), 담수유량(淡水流量) 등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천이(遷移)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하구의 상한은 조석 및 염분의 영향이 도달하는 한계 지점으로 하며, 하한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유량·퇴적·생태적 영향이 유의하게 미치는 해역의 한계로 한다.
2. “하천하구”란 하구 중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을 말한다.

3. “연안하구”란 하구 중 하천하구를 제외한 「연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연안해역의 일부를 말한다.

4. “하구관리구역”이란 하구의 복원·이용·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구의 일부 또는 전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구 주변의 육역(陸域)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5. “하구복원사업”이란 하구의 자연순환, 수질, 생태계, 서식지 등을 복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활동을 말한다.

가. 수문 개폐 또는 수로 재연결 등 담수 및 해수 흐름의 복원사업

나. 생물서식지 조성 및 수질 개선 등 생태 복원사업

다. 하굿둑·수문·방조제 운영개선 등 관리형 복원사업

라. 주민참여형·민관협력형 복원사업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하구의 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하구관리구역에 적용한다.

1. 하구 복원 및 관리의 목적

2. 하구의 환경적 특성

3. 하구의 공간·자원 이용 특성

4. 하구에 대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5. 하구 주변 육역이 하구에 미치는 영향
6. 하구 주변 육역의 환경친화적 이용·개발의 필요성
7.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보호지역, 관리지역 또는 구역
8.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그 밖에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하구의 복원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하구의 복원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적 순환체계의 복원을 우선할 것
2. 생태적 건강성과 수질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
3. 하구는 하천·연안·습지·농지·도시 등과 상호 연계된 지역으로서 계획·사업·관리·이용을 유역 단위 및 행정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
4. 농업용수 부족, 어업활동 제약, 항만 운영 등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5.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실태와 변화를 상시 파악하고, 복원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어업·항만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하구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하구복원사업의 추진 및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하구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하구종합계획 등

제7조(국가 하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0조에 따른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 대상 하구의 현황 및 전망
2. 하구 복원 및 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

3.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 및 시책
4.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연구·홍보, 정보의 제공, 민간 참여 등 지원방안
5. 복원된 하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하구복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하구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하구 관련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권역별 하구복원 기본계획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권역별 하구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하천에 연결된 하구와 국가가 설치한 하구 시설물에 대한 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하구의 복원 여건과 현황
2. 대상 하구의 복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
3. 대상 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복원 방안
4. 복원된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
5. 대상 하구의 복원 사업에 관한 교육·연구·홍보, 정보의 제공, 민간 참여 등 지원 방안
6. 대상 하구관리구역 내 토지·하천 및 시설물의 환경친화적 이용 방안
7. 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상 하구의 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 환경 및 하구 생태계, 농업용수 이용과 염분상승 등이 농업·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구 환경 및 하구 생태계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구생태환경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위한 하구생태환경통합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천하구와 연안하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등이 하구 생태계의 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생태환경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협력체계

제10조(국가하구위원회) ①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하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이하 “국가하천”이라 한다)의 하구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복원대상 하구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소관 업무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7. 복원된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 타당성·사업성 조사·평가, 시행 및 그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하구 복원 사업의 평가·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하구환경의 조사·측량·연구·교육·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하구 복원을 위한 재정의 분담·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하구의 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하천의 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

⑤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역하구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된 하구의 복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하구위원회(이하 “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하구 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복원대상 하구의 지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 하구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4. 복원대상 하구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있는 경우 대상 하구에 대한 공동 기본계획, 공동 복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하구복원사업의 평가·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하구복원사업 종료 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구 복원 사업주체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하구환경의 조사·측량·연구·교육·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재정의 부담·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할 하구의 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권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하구복원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원 대상 하구별로 복원센터(이하 “하구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하구복원사업 조사

2. 하구복원사업 기술 지원

3. 하구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하구복원센터는 하구복원사업의 성과 및 자료를 제22조에 따른 하구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하구복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하구 복원사업의 지정 및 시행

제13조(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은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생태 훼손도, 이용 현황, 복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하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해제 및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복원 대상 하구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복원 또는 관리할 필요성이 없게 된 지역

②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하구 복원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계획 등) ① 하구복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를 복원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와 그 사업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및 하구 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면적·기간 및 채원조달계획
2. 복원 목표 및 평가지표
3. 농업용수 대체시설 설치계획
4. 어업 및 항만 피해대책
5.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방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하구복원사업의 모니터링) ① 사업시행자는 하구복원사업의 사업의 시행 과정·현황·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내용, 사업 완료 후의 하구의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22조에 따른 하구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하구환경종합정보망에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5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의 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1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19.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는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하구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복원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시범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복원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의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하구의 수리·수문·수질·퇴적·생태계 및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

2. 하구복원사업의 계획, 추진현황, 성과 및 사후관리 결과에 관한 자료

3. 농업용수, 어업활동, 항만운영 등 하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자료

4. 하구 관련 연구, 조사,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 자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구의 보전·복원·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연계·공유를 추진하여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물환경종합정보망 등 환경 및 수자원과 관련된 정보체계와 연계·공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권역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역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망에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증 및 갱신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공동하구의 생태복원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자료·재원 및 인적교류 성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